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6. 6. 23

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5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6년 6월 22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2006년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었기 새로이 일부 개정된 재산세 규정과 임대주택 관련 감면 규정 등의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감면 규정 삭제 (안 제8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별도 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9조)
 - 2005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의 개정 필요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조문정비 (안 제11조)
 -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토지 및 지상정착물”을 “토지·지상정착물·주택”으로 개정함.
-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 유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조문정비 (안 제19조)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분 재산세 감면 조항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을 “창고용”으로 조문 정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세제과-1173(2006.2.2) 구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 공문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암법예고(' 06.2.16 ~ 3.8), (' 06.3.16 ~ 4.5)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조례안 제8조 및 안 제19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는 2005. 12. 31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터미널 부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하되었고 우리구 여건상 터미널부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면규정의 폐지는 타당하다 하겠으며,
- 조례안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근거조항 정비는 2005.7.13 개정된 임대주택법 및 2005.9.16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안 제14조의2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조례안 제14조의3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은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전액 면제는 조례안 제14조의2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율 50%와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율 50%와 비교하여 조정할 수도 있음.

4. 審查結果 : 原案可決